
2016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

2016. 3. 29



국무조정실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2016년도 정부업무평가 개요 | 1 |
| II. 특정평가 추진계획 | 3 |
| 1. 개 요 | 4 |
| 2. 국정과제 평가 | 6 |
| 3. 규제개혁 평가 | 8 |
| 4. 정책홍보 평가 | 9 |
| 5. 정상화과제 평가 | 10 |
| 6. 기관공통사항 평가 | 11 |
| III. 자체평가 등 추진계획 | 14 |
| 1.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| 15 |
| 2. 지방자치단체 평가 | 17 |
| 3. 공공기관 평가 | 21 |

2016년도 정부업무평가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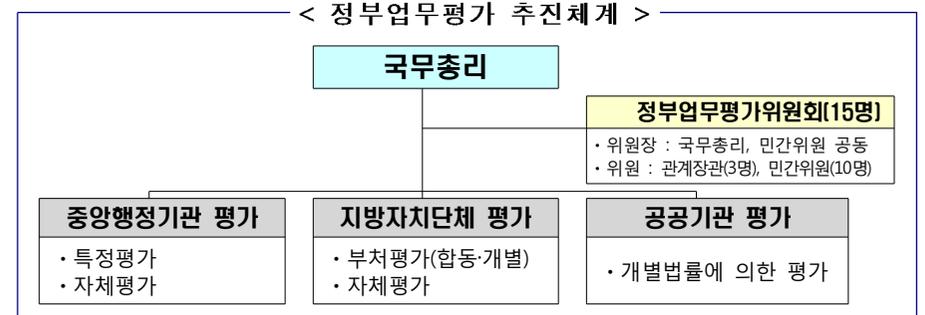
I. 2016년도 정부업무평가 개요

① 평가 추진방향

- 국정과제, 핵심개혁과제 등 평가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
- 협업·소통 강화 등 국민 체감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 실시

②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(정부업무평가기본법)

- 중앙행정기관 평가
 - (특정평가)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및 기관역량 등을 평가
 - (자체평가)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, 재정사업, R&D사업, 행정관리역량(조직·인사 등)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
- 지방자치단체 평가
 -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
- 공공기관 평가
 -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평가실시기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, 연구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



II. 특정평가 추진계획

1 개요

1 평가대상

- 기관 : 42개 중앙행정기관 (장관급 22개, 차관급 20개)
- 기간 : '16. 1.1 ~ 12.31

2 평가부문

- ① (국정과제) 국정과제 및 핵심개혁과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
- ② (규제개혁)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경제활성화 및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
- ③ (정책홍보)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국민의 정책성과 이해 및 체감 확산
- ④ (정상화과제)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·제도, 비리·부패 등을 바로 잡아 국정운영성과 뒷받침
- ⑤ (기관공통사항) 정부3.0, 성과관리, 특정시책 이행노력 및 성과 평가

< 2015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>

| 2015년 평가 | | | 2016년 평가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① 국정과제 | 50 | ⇒ | ① 국정과제 | 50 |
| 핵심개혁과제(과제별 최대 ±1) | | | 핵심개혁과제(과제별 최대 ±2) | |
| ② 규제개혁 | 20 | | ② 규제개혁 | 20 |
| ③ 정책홍보 | 20 | | ③ 정책홍보 | 20 |
| ④ 정상화과제 | 10 | | ④ 정상화과제 | 10 |
| ⑤ 기관공통사항 | ±10 | | ⑤ 기관공통사항 | ±10 |
| (정부3.0 ±5, 협업 ±3, 특정시책 ±2) | | | (정부3.0 ±5, 성과관리 ±3, 특정시책 ±2) | |

② 평가방법

- 평가부문별로 평가주관기관(국조실 등)이 평가지원단*을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적, 정성적 평가 병행

* 민간전문가, 정책수요자 등 참여

- 평가부문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

-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

< 평가 부문별 주관 >

| 평가 부문 | | 주관 | 평가지원단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국정과제(주요정책과제 포함) | | 국무조정실 | 국정과제평가지원단 |
| 규제개혁 | | 국무조정실 | 규제개혁평가지원단 |
| 정책홍보 | | 문화체육관광부 | 정책홍보평가지원단 |
| 정상화과제 | | 국무조정실 | 정상화과제평가지원단 |
| 기관 공통 | 정부 3.0 | 행정자치부 | 정부3.0평가지원단 |
| | 성과관리 | 국무조정실 | - |
| | 특정시책 | 고용부·복지부·중기청 등 | - |

③ 평가결과 활용

-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또는 평가보고회 개최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·이행
-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, 업무유공자 포상 실시
 - 각 기관이 성과급 등에 특정평가 결과를 반영

2

국정과제 평가

① 평가방향

-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140개 국정과제 전반을 국민체감 중심으로 객관적·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
- 핵심개혁과제, 협업 등의 평가 반영비중을 확대, 기관 역량 집중을 통한 연내 성과창출 유도

② 평가대상

- 42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및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 과제(주관 국정과제 1개 이하 기관), 핵심개혁과제 및 협업

③ 평가항목

| 평가항목 | 내용 | 비고 | 배점 |
|----------|--|-----------|----|
| 집행이행도 | ·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충실히 집행했는지 여부 | 정성/ 정량 | 20 |
| 성과지표 달성도 | · 사전에 제시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 | 정성/ 정량 | 40 |
| 정책효과 | ·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 체감성과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종합 평가 ·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(만족도 개선정도 포함) | 정성/ 정량 | 40 |

4 평가방법

< 평가등급 >

- 과제별 각 100점 만점으로 평정 후, 기관별 주관과제 평정 점수 합산·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기관별 평가등급 부여

< 평가항목별 평정 방법 >

- (집행이행도) 전체 단위과제수 대비 단위과제별 완수 여부에 따른 점수 합계 비율
 - * '15년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 이행 및 상황대응 미흡시 감점
- (성과지표달성도) 지표별 목표치 적극성 및 달성여부에 따라 평정, 사전에 설정한 각 지표별 가중치*에 따라 합산
 - * 지표별 가중치는 주관기관과 협업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
- (정책효과)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효과*의 정량적·정성적 평가 및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반영
 - * △성과지표 외 정책성과 △향후 효과발생 기대정도 △국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정도 등
- 국민체감도 반영 및 평가의 전문성·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원단(정부업무평가위원, 민간전문가 등) 구성, 평가 실시

◇ 가감점 평가

- 핵심개혁과제 : 과제별 ±2점 이내 점수 부여 및 국정과제 기관별 점수에 합산
- 협 업 : 기관별 ±1점 이내 점수 부여 및 국정과제 기관별 점수에 합산

3

규제개혁 평가

1 평가방향

-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정 보다는 규제개혁 성과에 초점을 두고 평가

2 평가대상

- 27개 중앙행정기관

| 구 분 | 기 관 명 |
|-----------|---|
| 장관급 (18개) | 기재부, 미래부, 교육부, 법무부, 행자부, 문체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복지부, 환경부, 고용부, 여가부, 국토부, 해수부, 방통위, 공정위, 금융위, 안전처 |
| 차관급 (9개) | 인사처, 보존처, 식약처, 관세청, 경찰청, 문화재청, 산림청, 중기청, 특허청 |

* 등록규제 수(30개 미만) 및 부처 특성을 고려 15개 기관 제외

3 평가항목 및 지표

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비고 | 배점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|
| 규제개선 | · 기존규제, 네거티브 설정 등 관련지표 달성도 등 · 과제 현장점검 등 이행 성과 | 정성/ 정량 | 50 |
| 규제심사 | · 자체 규제위 운영 성과 등 | 정성/ 정량 | 15 |
| 규제시스템 | · 규제비용총량제, 규제신문고 성과 등 | 정성/ 정량 | 20 |
| 규제개혁 체감도 | · 규제홍보노력 및 규제개혁 만족도 등 | 정성/ 정량 | 15 |

4 평가방법

- 기관의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기관을 범주화하여 평가
- 「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지원단*」 구성·평가
 - *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, 규제관련 민간전문가, 규제조정실 국장급 공무원 등

4

정책홍보 평가

1 평가방향

-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체감 확산을 위해 각 기관의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의 홍보노력 및 성과 중심 평가

2 평가대상

- 42개 중앙행정기관 (장관급 22개, 차관급 20개)

3 평가항목 및 지표

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국정과제 홍보활동 | · 국정홍보과제 홍보기획 실적 | 7점 |
| | · 기관간 홍보협업 실적 | 15점 |
| | · 언론 대응 실적 | 8점 |
| 국정과제 홍보성과 | · 방송·신문 보도성과 * 외신 대응 실적 | 16점 (±2점) |
| | · 기관장 홍보활동 성과 | 14점 |
| | · 온라인 홍보활동 성과 | 30점 |
| | · 국정홍보과제 홍보결과 | 10점 |
| 기관의 쉽고 바른 보도자료 사례 평가 | | ±2점 |

4 평가방법

- 각 기관의 정책 홍보활동 및 성과에 대해 정량·정성평가
- 문체부 주관, 「민관합동 정책홍보 평가지원단」 구성·평가

5

정상화과제 평가

1 평가방향

- 체감도 높은 성과창출을 위해 '과제선정 및 계획충실도' 비중을 확대하고, 정상화 효과, 정상화 홍보·확산 등을 종합평가

2 평가대상

- 39개 중앙행정기관의 100개 정부핵심과제 중심으로 평가
 - * 정부핵심과제가 없는 3개 기관은(행복청, 새만금청, 원안위) 평가대상에서 제외
 - **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로 중점관리과제 선정(가감점 부여 검토)

3 평가항목

| 평가항목 | 평가내용 | 방법 | 배점 |
|---------------|--|----|----|
| 과제선정 및 계획 충실도 | · 과제 발굴·선정의 적극성 및 이행 계획의 완성도 | 정성 | 20 |
| 과제 이행도 | · 과제별 세부과제 이행계획의 완수 여부 | 정량 | 20 |
| 정상화 효과 | · 정상화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 평가 | 정성 | 40 |
| | · 전문기관의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| 정량 | |
| 정상화 홍보·확산 | · 언론, 홈페이지 등 홍보 및 타 기관·민간 등으로 확산 실적 평가 | 정성 | 20 |
| | · 기관으로 이관된 자체관리과제 추진실적 평가 | | |

4 평가방법

- 기관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, 정부업무평가위원·민간 전문가 등으로 「정상화과제 평가지원단」을 구성·평가

< '15년 평가 대비 주요 변경사항 >

- ▶ '과제선정 및 계획충실도' 항목 비중 확대(10% → 20%)
- ▶ '정상화 홍보·확산' 항목 비중 축소(30% → 20%)

정부 3.0

① 평가방향

-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부 3.0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관의 중점 성과를 평가

② 평가대상

- 42개 중앙행정기관 (장관급 22개, 차관급 20개)

③ 평가항목 및 지표

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배점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추진역량 | · 정부3.0 변화관리 및 확산노력 실적 | 24 |
| 중점과제 성과 | · 국민참여 및 맞춤형 서비스 개선 실적 | 36 |
| | · 일하는 방식 혁신 실적 | 15 |
| | · 사전정보공표,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보 공개·활용 실적 | 25 |

* 100점 만점 평가 후 평균점을 기준으로 ±5점으로 전환

④ 평가방법

- 각 기관 중점 성과에 대해 정량·정성평가
- 행자부 주관, 「정부3.0 평가지원단」 구성·평가

성과관리

① 평가방향

- 기관의 성과관리·자체평가, 심층분석, 개별 평가 등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 지원

② 평가대상

- 42개 중앙행정기관 (장관급 22개, 차관급 20개)

③ 평가항목 및 지표

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배점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성과관리·자체평가 | · 성과관리·자체평가 실태점검 결과 | ±2 |
| 심층분석 등 | · 현안 심층분석 결과 이행실적, 민원만족도 등 | ±1 |
| 개별 평가 | · 개별평가(중앙행정기관·지자체) 사전협의 이행실태 | 0.5점 이내 감점 |

④ 평가방법

- (성과관리, 심층분석) 국조실 주관 점검결과 점수(100점 만점)의 기준점(예: 70점) 이상 달성 여부에 따라 가감점 부여
- (개별 평가) 개별평가(중앙행정기관·지자체) 사전협의 미이행 건수에 따라 감점 부여

특정시책

① 평가방향

- 장애인 고용 등 주요 시책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법정기준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평가

② 평가대상

- 42개 중앙행정기관 (장관급 22개, 차관급 20개)

③ 평가항목 및 배점

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장애인 고용 | · 법정 의무고용률(3%) 중심 가감점 | ±0.6 |
|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| · 법정 의무 구매비율(1%) 중심 가감점 | ±0.6 |
| 중소기업 제품 구매 | · 법정 의무 구매비율(50%) 중심 가감점 | ±0.6 |
| 기술개발 제품 구매 | · 기술개발제품 법정 권장 구매비율(10%) 중심 가감점 | ±0.2 |

④ 평가방법

- 법정기준 등 달성여부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
 - 각 평가항목별 시책 소관 기관*에서 추진실적 확인·검증
- * 고용부(장애인 고용), 복지부(중증장애인 생산품), 중기청(중소기업제품, 기술개발 제품)

Ⅲ. 자체평가 등 추진계획

① 평가방향

- 중앙행정기관별 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,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 국정성과 창출 지원
- 평가결과를 정책·예산·조직·인사·보수 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

② 평가대상

- 기 관 : 43개 중앙행정기관 (장관급 23개, 차관급 20개)
- 기 간
 - 주요정책/행정관리역량 : '16.1.1 ~ 12.31
 - 통합재정사업 : '14.1.1 ~ '16.12.31

③ 평가부문

- ① 주요정책 : 「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^{*}」의 관리과제
 - *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업무계획으로써 당해 연도 주요정책·사업 목표와 추진일정,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등 제시
- ② 통합재정사업 : 일반재정사업, R&D사업, 지역발전사업
 - * 평가대상 사업수 : 대상사업의 70%(2017회계연도 사업 평가시 100%로 확대)
- ③ 행정관리역량 :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관리^{*} 효율화 역량
 - * 조직·인사·정보화관리 등

④ 평가방법

- 중앙행정기관별 「2016년 자체평가계획」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
 - (주요정책) 기관별 업무특성에 부합되도록 자율적 평가지표 설정
 - (통합재정사업) 성과목표달성도, 성과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공통 평가지표를 사용하되 사업유형을 반영한 특성화지표 가미
 - (행정관리역량) 조직·인사·정보화 관리 관련 역점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(행자부·인사처)이 공통평가지표 개발·제시
- 평가결과 상대등급화
 - 평가결과가 정책개선·조직관리·개인평가 등에 연계,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 적용
- 평가총괄관련기관은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·점검 실시
 - (주요정책/행정관리역량) 자체평가 완료 후, 자체평가 운영에 대한 확인·점검
 - (통합재정사업) 통합 재정사업평가 메타평가 실시

⑤ 평가결과 활용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,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
- 중앙행정기관장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·예산·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·반영하고,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

<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>

| 평가유형 | | 평가부문·내용 | 평가시행기관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중앙 행정 기관 평가 | 합동 평가 | 국가위임사무, 국고보조사업, 국가 주요시책 등 |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장 |
| | 개별 평가 | 업무특성·평가시기상 합동평가 곤란시 (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) | 중앙행정기관장 |
| 자체평가 | | 소속기관의 정책 등 | 지방자치단체장 |

가.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

합동평가

① 평가방향

-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천동력 확보를 위해 국정기조 및 주요시책*에 대한 평가·환류를 강화

* 복지재정효율화, 일자리 창출,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등

- 평가준비기간 충분 제공, 평가결과의 차년도 지자체 사업 및 예산에 실질적으로 연계·반영 될 수 있도록 평가일정 조정

* (기존) 평가계획(전년도 11월) → 평가실시(2~7월) → 평가결과 통보(10월)
(변경) 평가계획(전년도 7월) → 평가실시(1~6월) → 평가결과 통보(7월)

- 평가지표수* 감축, 증빙자료 최소화**로 지자체의 평가부담 완화

* ('15년) 26개 시책 238개 세부지표 → ('16년) 27개 시책 196개 세부지표

** 중앙부처 시스템에서 추출 가능한 각종 통계자료 적극 활용

- 지방 물가안정관리평가 등 8개 개별평가*를 합동평가로 통합

* (행자부) 지방 물가안정관리 평가,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,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수준진단 평가 등 3개
(복지부) 기초노령연금 유공자 발굴 평가,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평가 등 2개
(농식품부) 지자체 농식품 수출확대 정책 평가 1개
(안전처 및 국정원) 을지연습평가,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등 2개

②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

- 대상기관 : 17개 광역지자체 (시·군·구 실적 포함)
- 시 기 : '16.1 ~ 6월

③ 평가방법

-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'합동평가실시계획' 수립,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의결
-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단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병행
 -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 및 현지검증 등 실시
 - * 타 지방자치단체 실적에 대한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병행

④ 평가결과 활용

- 행정자치부는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
 - * 市部와 道部를 구분하여 분야별·시책별 등급 공개
- 평가결과 우수 자치단체에 정부포상 및 재정인센티브 등 지원
- 우수사례 공유 확산 컨퍼런스 개최 및 우수사례집 발간
- 평가결과 부진시책에 대해 지자체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
 - * 평가지표·세부 산식 설명, 실적 현황 및 문제점 등 여건 진단

개별평가

① 평가방향

- 업무특성·평가시기 등으로 **합동평가가 곤란한 경우**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정 주요시책을 대상으로 **개별평가 실시**

② 평가대상 및 시기

- 대상기관 : 지방자치단체 (광역 및 시·군·구)
- 시 기 : 수시

③ 평가방법

- 평가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**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를 거쳐 ‘평가실시계획’ 수립**
 - ※ 부처의 개별평가 실시계획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타당성 검토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일괄 제출
- 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실시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평가 후, **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**

④ 평가결과 활용

-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등 제공
- 중앙행정기관은 개별평가 결과가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실태에 대한 지속 점검·관리

나. 자체평가

① 평가방향

-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**정책성과 창출 유도**
- 중앙의 국정과제 추진노력과 성과가 지역차원에도 구현·공유되도록 노력

② 평가대상

- 기 관 : 지방자치단체 (광역·기초)
- 기 간 : '16.1.1 ~ 12.31

③ 평가방법

- **평가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발·활용**하되, 과제별 **평가결과의 변별력이 강화**되도록 평가체계 마련
 - *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, 평가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
- **민간 2/3이상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병행**

⑤ 평가결과 활용

-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
- 평가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년도 성과관리계획, 개인성과 등에 반영
-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여, 평가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'17년도 자체평가 운영에 반영

3

공공기관 평가

1 평가방향

-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향상, 투명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경영실적 등을 평가

2 평가유형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7개 법률에 의해 609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및 연구성과에 대해 평가

| 근거 법률 | 평가대상 | 평가 주관기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|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(116개) | 기획재정부장관 |
| 국가재정법 | 기금(65개) | 기획재정부장관 |
| 과학기술기본법 |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(44개) |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(자체평가), 미래창조과학부 장관(상위평가) |
|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| 경제·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(26개) |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|
| 지방공기업법 | 지방공기업(340개) |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·도지사 |
|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|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(18개) |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(수원·창원) 시장 |

3 평가방법 및 시기

① 공기업·준정부기관

- 기관·기관장·상임감사 평가로 구분
- 평가계획(3월) → 평가시행(3~5월) → 평가결과(6월)

② 기금

- 자산운용·기금존치 평가로 구분
- 평가계획(전년 12월) → 평가시행(3~4월) → 평가결과(5월)

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
- 부처·연구회가 소관 기관의 경영·연구성과를 평가(자체평가)하고 미래부에서 자체평가 적절성 등에 대한 상위평가 실시
- 기관장 임기 등에 따라 공통기준형/중간컨설팅/종합평가로 구분
- 평가계획(전년 9~당해년 2월) → 평가시행(2~12월) → 평가결과(2~12월)
※ 공통기준형(2~5월), 중간컨설팅(2~5월, 8~10월), 종합(3~5월, 6~8월, 9~11월, 12월~'16.2월)

④ 경제·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
- 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·경영성과를 평가
- 평가계획(전년 10월) → 평가시행(1~3월) → 평가결과(4월)

⑤ 지방공기업

- 지방공사·공단 및 광역 상·하수도(행자부), 기초 상·하수도(시·도) 평가로 구분
- 평가계획(1월) → 평가시행(4~6월) → 평가결과(7월)

⑥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
- 경영·연구·고객만족도 평가로 구분
- 평가계획(행자부, 3월) → 자체평가계획(시·도, 4~6월) → 자체평가시행(시·도, 4~7월) → 평가결과 행자부 제출(시·도, 9월)

4 평가결과 활용

- 평가결과는 각 평가 주관기관에서 소관 공공기관 및 기관장의 보수·인사·예산 등과 연계·반영